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07. 6. 8.)

(전부개정 2016. 7. 19.)

(전부개정 2019. 11. 20.)

(전부개정 2022. 12.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 등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손실 등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활동종사자·교직원·학생 또는 연구실 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재료를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 등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총장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란 본교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관리”란 연구실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폭발·화학물질·실험폐기물·미생물 유출 등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운영하는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0.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1.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2.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4. “보호구”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성 물질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15. “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기구·장비·위험장소·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제2장 안전관리 조직 체계 및 직무

제4조(안전관리조직) ①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대행하는 기간은 30일 이내(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조직도는 [별표 1] 과 같다.

제5조(총장의 직무)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1.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4.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5.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8.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9.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0.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나. 사고조치 및 전망

다. 그 밖에 중요한 사항

11.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분야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정밀안전진단 실시대상 연구실에 대하여 노출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출도평가 대상 연구실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 나.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 다. 연구실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
4. 연구실의 사고 원인조사, 예방계획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연구실의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②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관리·감독하며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제7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①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직무 대리자 포함)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
3.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진단에 관한 사항
5.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사고의 기록·유지 및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
7. 안전장치·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8.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9.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지도·조언 사항
10.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사고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유지
5. 매일 1회(저위험 연구실은 주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6.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7.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8.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배치도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9조(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장비의 사전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총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는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안전환경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6.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긴급 비상연락 및 연구실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7.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대학 내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설지원실장이 된다.
-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⑨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안전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장 안전교육·훈련의 실시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6조에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10조1항과 같다.
-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교육의 시간·내용·방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10조2항과 같다.
- ⑤ 정기교육은 집체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실시 후 정기·신규교육 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와 정기·신규교육 참석자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안전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제12조(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총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연구활동종사자가 있는 연구실에는 외국인 연구활동종사자의 모국어어를 병행하여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실사고·중대 연구실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

제13조(연구실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방안) ① 사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및 사고 대응 체계는 [별표 2]와 같으며, 모든 연구실에 비치 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인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실 내 비치된 사고발생 대응매뉴얼에 수록된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응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사고 발생시 연구실 사고유형에 따른 단계별 행동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

제14조(사고조사) ①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담당부서에 사고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담당부서는 사고조사 후 총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사고조사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총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총장은 제6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⑧ 총장은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시설보완 등 후속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및 집행

제15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안전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건강검진
4. 보험료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안전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제17조(건강검진) ① 총장은 제4항에 따른 유해인자(물질)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제4항에 따른 유해인자(물질)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발암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외의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함)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⑤ 안전담당부서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담당부서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유소건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⑦ 안전담당부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18조(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 ① 제5조제16호에 따른 노출도평가 대상 연구실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책임자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노출도평가를 요청할 경우
2.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를 포함한다)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CMR물질(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가스, 증기, 미스트, 흙, 분진, 소음, 고온 등 유해인자를 인지하여 노출도평가를 요청할 경우
3.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노출도평가의 필요성이 전문가(실시자)에 의해 제기된 경우
4. 중대 연구실사고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총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에 의해 노출도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② 노출도평가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측정방법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연구실은 노출도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노출도평가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요건이 충족된 기관 또는 동등한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는 노출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연구실안전법」 제17조에 따른 대행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

④ 노출도 평가는 연구실의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노출이 가장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연구활동 시점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노출도 평가 실시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노출기준 초과시 감소대책 수립, 연구활동종사자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노출도 평가 대상 연구실 선정 및 제5항에 따른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고용노동부고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점검) ① 총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상점검[별지 제5호 서식]을 매일 1회(저위험 연구실은 주1회)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을 매일(저위험연구실: 매주) 확인·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책임자가 휴가·질병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연구실에 부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밀안전진단) 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독성가스·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특별안전점검은 「연구실안전법」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법」 제19조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④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방법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에 관한 지침」(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라 한다)에 따른다.

제22조(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총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연구실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연구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점검 및 진단결과 안전등급 평가결과 4등급 또는 5등급 연구실의 경우에는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보험가입) ① 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②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해지는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4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과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별표 3]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 일반·기계·전기·화공·소방·가스·산업위생·생물 등 유형에 따른 적절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연구실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에는 각 연구실 특성(위험성)에 맞는 안전수칙을 비치(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25조(포상) ① 연구실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학과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본교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학과(부서) 및 개인
3. 안전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징계)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연구실안전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연구활동종사자측위원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문서보존기간) 연구실 안전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1. 사고(재해) 발생기록: 영구
2. 연구실책임자·안전환경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변경 시까지
3. 위원회 회의록: 3년
4. 일상점검표: 1년
5.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결과·노출도평가결과보고서: 3년
6.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5년 (CMR물질 관련 특수검진서류: 30년)

제28조(변경절차) ①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실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교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본교 내 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추두고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준수) ① 본교 내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및 방문객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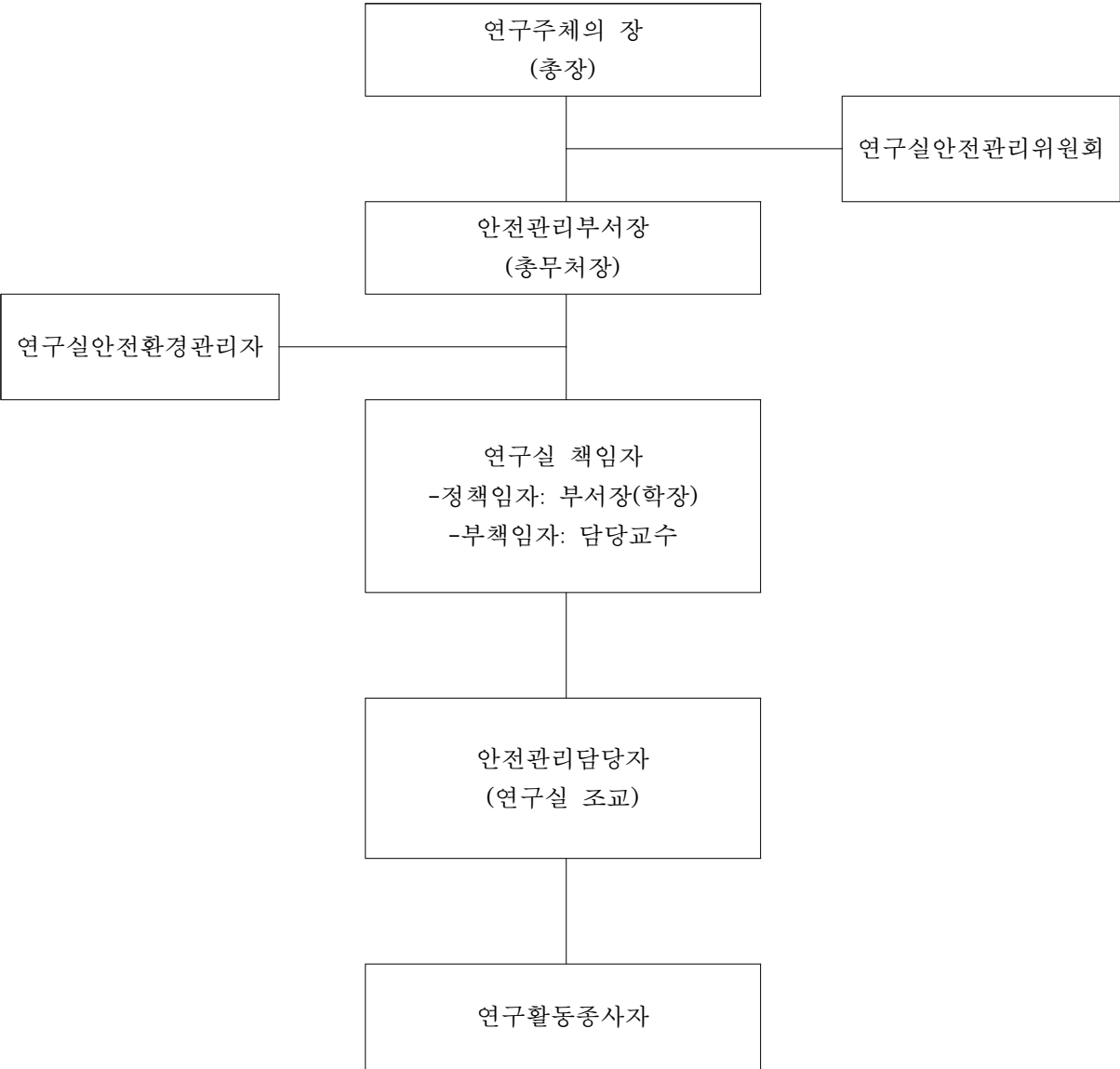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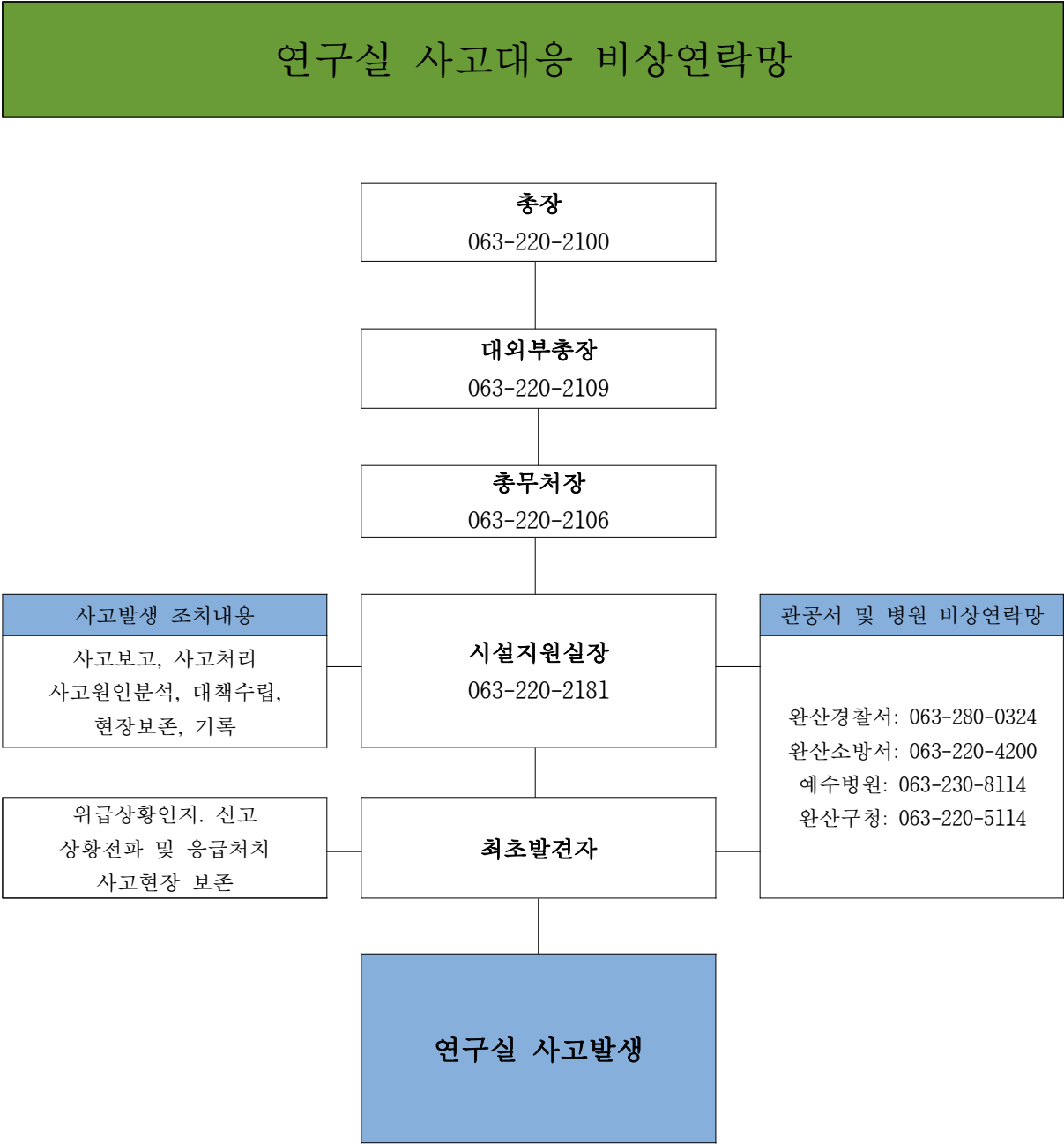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도



[별표 2] 연구실 사고보고 및 사고대응 체계



[별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1. 일반안전

- 가. 안전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 활동 및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항상 상기한다.
- 나. 위험한 화학물질은 반드시 후드 안에서 취급하며, 화학물질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지 아니한다.
- 다. 연구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적절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상황에서만 실험을 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실험을 하고, 인근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실험하는 곳을 알려주고 서로 상호간에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연구 활동에서는 약품이 튀거나 넘어져 눈에 들어갈 위험이 있으며, 가압된 진공 용기는 폭발하거나 파열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을 할 때 연구활동종사자는 보안경, 고글, 안전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부분 실험은 보안경만 사용해도 되지만, 특수한 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약품용 보안경 또는 안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마. 80dB 이하의 소음은 청각에 위험을 주지 않지만, 85dB 이상에서는 위험하므로 피하여야 한다. 귀 덮개는 95dB 이상의 높은 소음에 적합하고 귀마개는 80~95dB 범위의 소음에 적합하다. 만일 청각의 유해 영향 인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소음 측정하여야 한다.
- 바. 마스크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종류와 크기가 많으므로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천으로 된 마스크는 작은 먼지는 보호할 수 있으나 화학약품에 의한 분진으로부터는 보호하지 못하므로 독성 실험 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사. 약품이 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험복, 보안경, 보안마스크, 앞치마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부식성 물질이거나 쉽게 피부에 흡수되는 약품을 취급할 때는 안전장갑이 필요하다.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 긴 머리, 반짝이는 보석 등은 실험실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아.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는 실험을 할 경우에는 적합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자. 수행되고 있는 연구는 항상 관심과 지켜보는 습관을 갖고, 방치하지 아니한다.
- 차. 연구실 내의 보관 장소, 냉장고, 유리 기구에 음식이나 음료수를 보관·취급하지 않으며 실험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아니한다.
- 카. 실험 후에는 반드시 노출된 피부를 씻는다.
- 타. 연구실은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 파.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제공하고 사용하도록 한다(예: 마스크, 고글, 안전장갑, 실험복, 안면보호대 등). 다만, 연구실 실외에서는 착용하지 아니한다.
- 하. 모든 화학물질에는 물질의 이름, 특성, 위험도, 주의사항 및 관리자 이름을 표시한다.

2. 기계안전

- 가. 연구활동종사자는 그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
- 나. 장갑은 표면이 거친 작업 물을 만질 때 사용하고 기계 운전 시는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 다. 기계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고장중인 기계는 “고장”, “사용 못함” 등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 라. 기계가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계 옆을 떠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마. 실험 중에 통행자에 의해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운동부위는 덮개를 설치한다.
- 바. 기계는 항상 잘 손질되어 있어야 하며 청소 혹은 점검, 수리를 할 때에는 필히 기계를 정지시키고 행하여야 한다.
- 사. 기계에 너무 자신을 갖고 방심하여 일하지 말고 원리원칙을 충분히 알고 나서 기계를 작동하여야 한다.
- 아. 정전으로 인하여 기계작동이 중지되었을 때 필히 “정지” 스위치를 넣어야 한다.
- 자. 원칙적으로 구동 중인 기계부분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하고, 작동 중인 기계에 주유하면 위험하므로

금지하여야 한다.

차. 공작물은 견고하게 체결하여 작업 중 공작물이 이탈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카. 공작물이 켜 때에는 지지대를 사용하고 타인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타. 기계를 정지시킬 때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는 손대지 말아야 하며 기계의 타력을 손이나 공구, 기타 물건으로 정지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파. 회전 물체의 방향 쪽에서는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

가. 일반사항

- ① 전기스위치 부근에 인화성, 가연성 용매 등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
- ② 분전함 내부에 공구, 성냥 등 불필요한 물건을 놓아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전동기 등의 전기장치에 스파크나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스위치를 끄고 전기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④ 모든 스위치는 상용처의 이름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⑤ 전기수리 또는 점검할 때에는 “수리 중”, “점검 중”을 표시하고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금지를 시켜야 한다.
- ⑥ 접지를 올바른 곳에 확실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⑦ 스위치, 배전반, 전동기 등 전기기구에 불이나 기타 물체가 닿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⑧ 배선의 용량을 초과하는 전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⑨ 승낙 없이 임의로 전기배선을 접속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⑩ 결함이 있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⑪ 전원으로부터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 전체를 잡아당겨야 한다.

나.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지대책

- ①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아니한다.
- ②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 접지시켜야 한다.
- ③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 감전사고시의 재해를 방지한다
- ④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⑤ 젖은 손으로 전기 기기를 만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⑥ 개폐기에는 반드시 전격 퓨즈를 사용하고, 구리선과 철선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⑦ 불량하거나 고장 난 전기제품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⑧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한 접속부분이 있는 곳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⑨ 전선 접속 부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소정의 접속기구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⑩ 변압기·차단기, 또는 탱크·건물 벽 등을 통과하는 곳에는 절연체인 부싱을 사용한다.
- ⑪ 누전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⑫ 전선과 움직이는 물체와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⑬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여야 한다.

4. 화공안전

가. 화학물질의 취급을 위한 일반적 기준

- ① 모든 용기에는 약품의 명칭을 기재한다.(중류수처럼 무해한 것도 포함한다.) 표시는 약품의 이름, 위험성, 예방조치, 구입날짜, 사용자 이름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② 약품 명칭이 없는 용기의 약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표기를 하는 것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즉각적으로 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화재, 폭발 또는 용기가 넘어졌을 때 어떠한 성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용기가 찌그러지거나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연구실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 실험 후에는 폐기용 약품들을 안전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 ③ 절대로 모든 약품에 대하여 맛 또는 냄새 맡는 행위를 금하고, 입으로 피펫을 빨지 아니한다.

- ④ 사용한 물질의 성상, 특히 화재·폭발·중독의 위험성을 잘 조사한 후가 아니면 위험한 물질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위험한 물질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소량을 사용하고, 또한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 ⑥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재해 방호수단을 미리 생각하여, 만전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는 방호면, 내열 보호복, 소화기 등을, 중독의 염려가 있을 때는 장갑, 방독면, 방독복 등을 구비 또는 착용하여야 한다.
- ⑦ 유독한 약품 및 이것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는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⑧ 약품이 엇질러졌을 때는 즉시 청결하게 한다. 누출 양이 적은 때는 그 물질에 대하여 전문가가 안전하게 치우도록 한다.
- ⑨ 고열이 발생하는 실험기기(Furnace, Hot Plate 등)에 대하여 ‘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경고문을 붙이도록 한다.
- ⑩ 화학물질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

나. 화학물질 저장에 위한 일반적 기준

- ① 모든 화학물질은 특별한 저장 공간이 있어야 한다.
- ② 모든 화학물질은 물질이름, 소유자, 구입날짜, 위험성, 응급절차를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소에 저장하며, 이종물질을 혼입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화기, 열원으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 ④ 다량의 위험한 물질은 법령에 의하여 소정의 저장고에 종류별로 저장하고, 또한 유독물은 약품 선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 ⑤ 특히 위험한 약품의 분실, 도난 시에는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환경관리자나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소방안전

가. 소방시설 관리 기준

- ① 소화기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보관 관리하고 오염 및 소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화기 및 소화전 작동방법을 항상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화재수신기의 기능과 조작방법을 평상시 숙지하고 모든 스위치는 정상위치에 놓아두며 화재 발생 시 화재발생구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화재 유무를 확인한 다음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비상관제실에 연락한 다음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여 초기 화재진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평상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피난유도등, 피난비상계단, 소화전표시, 발신기, 자동 화재탐지기, 피난사다리, 완강기, 소화기 등) 이상 발생 시 즉시 방재실로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한다.
- ⑤ 소화전과 방화문 앞에는 소화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놓아두지 아니한다.

나. 화재 시 대피요령

- ①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에 바로 신고한다.
- ②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온다.
- ③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④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⑤ 탈출한 이후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⑥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굴뚝역할을 하므로 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화재예방 수칙

- ① 연구실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②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월1회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③ 전기기구에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 개의 전열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④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피난방법, 피난로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⑤ 비상구에는 빈 박스, 쓰레기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아니한다.
- ⑥ 연구실에 가급적 인화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⑦ 평상시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한다.

6. 가스안전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방법상의 주의사항

- ①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가능한 곳에 세워서 보관하여야 하고, 40℃ 이하여야 한다.
- ② 충전용기와 빈 용기를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용기와 함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유효기간과 압력 시험 합격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 ③ 용기보관실 및 사용 장소에는 가죽끈이나 체인으로 고정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산소는 밸브와 용기의 연결부위 및 기타 가스가 직접 접촉하는 곳에 유기물질 등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가스가 고속으로 분출되면 그 전면에 충격파가 생겨 고온이 되고 다시 이 기류가 배관의 벽에 충돌하면 더욱 온도가 올라가 폭발할 수 있으므로 산소밸브를 열 때 천천히 열어야 한다.
- ⑥ 산소를 사용하여 압력시험이나 먼지제거 및 청소 등을 절대 금하여야 한다.
- ⑦ 조연성(산소, 이산화질소 등) 및 가연성 가스(아세틸렌, LPG, 수소 등) 주위에는 화기 및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
- ⑧ 산소와 관련된 압력계 및 압력 조정기 등은 산소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⑨ 산소는 화학적으로 대단히 활발하고 과산화물의 생성으로 폭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 ⑩ 질소 및 탄산가스 누출 시 질식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⑪ 액체 가스는 초저온 액체이므로 눈 또는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액체 취급시에는 보호구(안면보호구 및 장갑)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 ⑫ 액체산소 취급 시에는 가연성물질을 옆에 두지 말고 연결구 등에 기름 성분이 묻어 있으면 발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름 묻은 장갑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7. 산업위생안전

가.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일반수칙

- ① 실험실에서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실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실험실의 전반적인 구조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출입구는 비상시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사고 시 연락 및 대피를 위해 출입구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연락망 및 대피경로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⑤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⑥ 실험에 필요한 시약만 실험대에 놓아두고, 또한 실험실내에는 일일 사용에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시약명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라벨(Label)에는 물질 명, 뚜껑을 개봉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 ⑧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싱크대나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폐액 수거용기에 안전하게 버

려야 한다.

⑨ 실험실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험실내 실험장치, 시약보관 상태, 소방설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⑩ 취급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게시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나. 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보건 수칙

① 유해물질, 방사성물질 등 취급하는 실험실에서는 실험복, 보안경을 착용하고 실험을 하여야 한다. 일반인이 실험실에 방문할 때에는 보안경 등 필요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맡지 말아야 한다.

③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을 할 때에는 부스(Booth)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절대로 입으로 피펫(Pipet)을 빨면 아니 된다.

⑤ 하절기에도 실험실내에서 긴바지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음식물을 실험실내 시약 저장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또한 실험실내에서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⑦ 실험실에서 나갈 때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⑧ 실험장비는 사용법을 확실히 숙지한 상태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8. 생물안전

가. 연구실 책임자는 모든 실험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실험종사자는 연구실 책임자가 안전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연구실험실 출입문은 잘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제한한다.

라.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는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재해(Biohazard)”등의 생물안전표지를 반드시 부착한다.

마. 깨진 유리제품은 손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핀셋, 집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바. 실험 종료 후 그리고 연구실험실을 나올 때에는 손을 씻는다.

사. 실험 종료 후 실험대를 소독하여야 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예방을 위해 즉시 소독하여야 한다.

아.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배양액, 저장용기 및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으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차.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카. 연구실험실에 대한 곤충, 설치류 방제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타. 오염폐기물 등 실험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여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한다.

파.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 활동에 적합한 보호기능이 있는 실험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외부로 나갈 때는 실험복을 탈의하여야 한다.

하. 감염물질 및 오염된 장비를 다룰 때에는 장갑을 착용한다.

가) 실험안전작업대 외부에서 미생물을 다룰 경우 고글이나 마스크 같은 안면보호 장비를 사용한다.

9. 레이저 안전

레이저는 유도 방출에 의해 광을 발진 혹은 증폭시키는 장치로서 작은 면적에 많은 에너지를 집중시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집중된 에너지가 눈, 피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면 손상을 입거나 눈의 경우 실명을 할 수도 있다. 레이저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레이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실험을 할 때는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여야 한다.

레이저의 분류

등급	설명	피폭방출한계치
등급1	위험수준 가장 낮고 인체에 무해	없음
등급1M	렌즈가 있는 광학기기 사용시 위험	
등급2	눈을 깜빡여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도(0.25s)	등급1 적용(0.25s 이하) 최대 1mW(0.25s 이상)
등급2M	렌즈가 있는 광학기기 사용시 위험	
등급3R	레이저 빔이 눈에 들어오면 위험	50mW(비가시광 영역) 5mW(가시광영역)
등급3B	13cm 이상 떨어졌거나 10s 미만의 노출 시 반사된 레이저 빔으로부터 안전	500mW (315-1000nm, 0.25s 이상)
등급4	직·간접적인 레이저 빔 입사는 매우 위험 눈 또는 피부손상, 화재 위험	500mW 이상

등급 분류 : KS C IEC60825-1

- ① 레이저를 사용하는 연구실 출입구에는 레이저 사용을 알리는 위험군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출입구에는 레이저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비를 비치하고 출입 시에는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여야 한다.
- ③ 레이저 장비의 작동 중에는 “사용 중”, “접근금지” 등의 표지를 부착하여 실험자의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한다.



레이저 경고표지

- ④ 레이저 안전관리자의 관리하에 방사위험이 없는 조건에서 허가된 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만 원격 연동장치 콘넥터가 일시적으로 해제될 수 있어야 한다.
- ⑤ 레이저 빔의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로가 눈높이보다도 위쪽 또는 아래쪽에 위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모든 레이저 보안경에는 보안경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보호가능 레이저 등급표시를 안전표지 또는 각인 인쇄 등의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⑦ 보안경의 선택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보안경은 착용이 쉽고 가능한 시야가 넓을 것
 - 나. 충분한 환기성을 유지하면서 가시광 투과율이 높을 것
 - 다. 위험한 경면 반사가 유발되는 평평한 반사면이 가능한 없을 것
 - 라. 4급 레이저제품용 보안경의 경우, 레이저방사에 대비한 내성 또는 안정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⑧ 피부에 대한 최대 허용노출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방사에 인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복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⑨ 4급 레이저제품의 경우,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난연성 보호복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⑩ 눈이 유해한 광선에 폭로되었거나 폭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안과 전문의의 의학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결과서

결 재	담 당	실 장	부 서 장

작성일자 : 20 . .

교육의 구 분	정기 안전 교육 · 훈련		신규 안전 교육 · 훈련	
	특별 안전 교육 · 훈련		기 타	
교육 실시자	부서명			
	성 명			
교육 시간	: ~ : (총 교육시간:)			
교육 인원	구 분	계	교육미 실시 사유	
	대상자(명)			
	참석자(명)			
	참석률(%)			
교 육 내 용				
특 기 사 항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20 년 월 일

교육구분 : 정기교육·훈련□, 신규교육·훈련□, 특별안전교육·훈련□, 기타()

NO	학과(부)	성명	서명	NO	학과(부)	성명	서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연구실사고 조사표

기관명				기관 유형		[]대 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 []그 밖의 기관							
주소													
사고 발생 원인 및 발생 경위 ¹⁾		사고일시		년 월 일 시									
		사고 장소		학과(부서)명: 연구실명: (연구 분야 :)									
		연구활동 내용		연구활동 수행 인원, 취급 물질·기계·설비, 수행 중이던 연구활동의 개요 등 기록									
		사고 발생 당시 상황		불안전한 연구실 환경, 사고자나 동료 연구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기록									
피해 현황	인적 피해	성명	성별	출생 연도	신분 ²⁾	상해 부위	상해유 형 ³⁾	상해·질 병 코드 ⁴⁾	치료(예 상)기간	상해· 질병 완 치 여부	후유장 해여부 (1~14 급)	보상 여 부	보상 금 액
		①											
		②											
		③											
		④											
		⑤											
	※ 인적 피해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 피해 현황’ 부분만 별지로 추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적 피해	피해물품							피해금액		약 백만원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시점까지 내부보고 등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치료 및 복구 등) 기록											
재발 방지 대책		(상세계획은 별첨)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진단			[] 실시(실시일:) [] 미실시(사유:)								
		보험가입			[] 가입(가입일:) [] 미가입(사유:)								
		안전교육			[] 실시(실시일:) [] 미실시(사유:)								
별첨		재발 방지 대책 상세 계획 사고장소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관계자 확인 년 월 일)	총장	(서명 또는 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서명 또는 인)
	연구실책임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실 일상점검표							
기관명		결 재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명			연구실 안전관리자				
구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반안전	연구실(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연구실(실험실)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여부						
	안전수칙, 안전표지, 개인보호구, 구급약품 등 실험장비(흡후드 등) 관리 상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게시						
기계기구	기계 및 공구의 조임부 또는 연결부 이상여부						
	위험설비 부위에 방호장치(보호 덮개) 설치 상태						
	기계기구 회전반경, 작동반경 위험지역 출입금지 방호설비 설치 상태						
전기전압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전원투입 상태 확인 및 무분별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 전기배선의 절연피복 손상 및 배선정리 상태						
	기기의 외함접지 또는 정전기 장애방지를 위한 접지 실시상태						
	전기 분전반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화공안전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MSDS의 비치						
	화학물질의 성상별 분류 및 시약장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여부						
	소량을 덜어서 사용하는 통, 화학물질의 보관함,보관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여부						
	실험폐액 및 폐기물 관리상태 (폐액분류표시, 적정용기 사용, 폐액용기 덮개체결상태 등)						
	발암물질, 독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격리보관 및 시건장치 사용여부						
소방안전	소화기 표지,적정소화기 비치 및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상태						
	비상구, 피난통로 확보 및 통로상 장애물 적재 여부						
	소화전, 소화기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가스안전	가스 용기의 옥외 지정장소보관, 전도방지 및 환기 상태						
	가스용기 외관의 부식, 변형, 노출잠금상태 및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여부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 역류/역화 방지장치, 중화제독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배관 표시사항 부착, 가스사용시설 경계/경고표시 부착, 조정기 및 밸브 등 작동 상태						
	주변화기와의 이격거리 유지 등 취급 여부						
생물안전	생물체(LMO 포함) 및 조직, 세포, 혈액 등의 보관 관리상태(보관용기 상태, 보관기록 유지,보관장소의 생물재해(Biohazard) 표시 부착 여부 등)						
	손 소독기 등 세척시설 및 고압멸균기 등 살균 장비의 관리 상태						
	생물체(LMO 포함) 취급연구시설의 관리,운영대장 기록 작성 여부						
	생물체 취급기구(주사기, 핀셋 등), 의료폐기물 등의 별도 폐기 여부 및 폐기용기 덮개설치 상태						
지시(특이) 사항 :							
* 상기 내용을 성실히 점검하여 기록 함							